2015업무평가제 최종평가기준표(구,동)

□ 심사기준

① 적절성 및 타당성	○ 관련법규를 검토하였다, 관련법규를 개선(제·개정)하였다		
	○ 성과지표의 목표를 도전적으로 잡았다		
② 창의성 및	○ 성과지표를 상향 수정하였다. ○ 사업성과가 혁신적, 창의적이다		
파급효과	○ 사업성과가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행정발전에 기여했다 ○ 사업성과가 구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		
③ 효과성	○ 예산계획 또는 홍보계획이 수립되어있다 ○ 예산절감 또는 보도자료를 통해 구민홍보를 시행했다		
④ 협 업 협 치	○ 중앙부처, 서울시, 민간단체 등 기관·단체의 협의과정이 있었다○ 여러 부서가 협업하여 추진하였다.		
⑤ 민원해결	○ 민원사항을 예측하고 사전에 적절히 대처하였다 ○ 민원이 발생하였고, 해결하는 과정(결과)가 있었다.		

□ 심사방법

부서성과사업이 적절성 및 타당성, 창의성 및 파급효과, 효과성, 협업,민원해결 등에서 탁월, 우수, 보통, 미흡, 부진으로 평가하여 배점

□ 평가배점 : 40점

탁월	우수	보통	미흡	부진
40~33점	32~25점	24~17점	16~9점	8~1점